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40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3. 10.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번호 3407

I. 개정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남창진 의원 (찬성 22명)

나.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임산부의 자녀 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이내에서 7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4제1항).

- 교통비 지원 조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함(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 교통비 신청 조건을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함(안 제4조의4항1항제2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 2026.2.20.~24, (의견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임산부 교통비의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요건 및 신청기한 등을 재설계하기 위함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u>이내</u> 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u>이상</u> -----.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 <u>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u> -----(------ ----- <u>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u> ----- -----)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u>3개월</u> 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2. ----- <u>6개월</u> ----- -----
② ~ ⑦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지원금액을 기존 1인당 70만원 ‘이내’ 에서 ‘이상’ 으로 변경하고, ②거주요건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에서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로 강화하고, ③신청기한은 출산 후 ‘3개월 이내’ 에서 ‘6개월 이내’ 로 확대하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안 제4조의4 제1항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70만원 <u>이하</u>	임산부 1인당 70만원 <u>이상</u>
안 제4조의4 제1항 제1호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u>서울 거주</u>	신청일 기준 <u>6개월 이상 서울 거주</u>
안 제4조의4 제1항 제2호 (신청기간)	임신 중 ~ 출산 후 <u>3개월 이내</u>	임신 중 ~ 출산 후 <u>6개월 이내</u>

- 또한 부칙에서는 지원금액의 확대(70만원 이상)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부칙 제2조) 등을 두고 있음.

개정안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거주요건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 제1항의 지원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거주요건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2 검토 의견

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확대 (안 제4조의4 제1항)

-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인 현행 조례 제4조의4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지원금액을 7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안) 심사 당시 자녀 수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을 1자녀 70만원, 2자녀 80만원, 3자녀이상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원 확대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점이 지적되며, 근거 규정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임신부 교통비의 다자녀¹⁾ 추가지원 관련 예산을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음.
- 근거 규정의 미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임신부에게 교통비 지원 확대에 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u>이내</u> 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u>이상</u> -----.

- 다만,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액을 집행부서에서 1자녀 70만원, 2자녀 8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①예산이 확정되어 편성되어 있는 점, ②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는 점, ③주요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조례에 자녀 수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을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70만원 ‘이상’ 이라는 하한액보다는 100만원 ‘이내’ 로 상한액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6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²⁾>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6년 예산(안)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36,774,600천원
	- '25년 미사용자 24,330명*350,000원 = 8,515,500천원
	- '26년 사용대상자 = 28,259,100천원
	▷ '26년 상반기 신청자 = 18,839,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17,544명*700,000원 = 12,280,800천원 • 둘째 6,987명*800,000원 = 5,589,600천원 • 셋째 이상 969명*1,000,000원 = 969,000천원
	▷ '26년 하반기 신청자 = 9,419,7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17,544명*350,000원 = 6,140,400천원 • 둘째 6,987명*400,000원 = 2,794,800천원 • 셋째 이상 969명*500,000원 = 484,500천원
	증감사유
	○ 다자녀 차등지원 및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대상자 확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지원(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나. 임산부 교통비 신청인의 거주요건 강화 (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신청일 기준 ‘서울시 내 거주’ 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 내 거주’ 로 강화하기 위함임.

2) 2026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여성가족실, p.3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u>이내</u>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 ----- ----- <u>이상</u>-----.</p> <p>1.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 ----- <u>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u>----- -----)</p>

- 개정안의 거주요건(6개월)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신·출산 관련 지원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낮추어³⁾,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폐지(2024.3.)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27호에 따라 다문화가족 임산부에 대해 거주요건 6개월을 확인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 제출 없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음⁴⁾.
- 그러나 최근 단기 전입 등을 통한 부정수급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임⁵⁾.

3)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거주요건 전격 폐지 (2024.3.18.), (담당부서: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4) 한눈에보는 규제철폐(스마트 서울부), 규제철폐안[27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5) [보도자료] 한경, 권용훈 기자, 서울 임산부 교통비 '거주 요건' 부활, 2025.11.24.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거주요건>

구 분	이 전	현 행	개정안
제안자	시장	유만희 의원	남창진 의원
거주요건 (조례 제4조의4 제1항제1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공포 (시행일)	2022.4.28. (2022.7.1.)	2024.3.15. (2024.3.15.)	-

- 지원 금액이 ‘70만원 이상’ 으로 확대된 개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당시(2024.3.)에도 “거주지 이동을 통해 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수급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검토의견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부정수급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뒤늦은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 또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거주요건의 기간을 6개월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해 집행부서는 인천, 경기 등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6) (의안번호 1552)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 2024.2.28.

두고 있어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더욱이 집행부서(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에서 제출한 부정수급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지급건 (38,483건) 중 의심사례는 총 26건으로 전체의 0.07%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이미 11건은 소명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거주요건만 강화할 경우 서울시 내 전입 후 거주요건 6개월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사업의 신청기한(출산 후 6개월)이 지나 서울시에 실거주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⁷⁾.
- 2024년 3월에도 이와 동일한 민원으로 인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던 만큼, 단순한 지원요건 강화보다는 타 지자체와 중복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소급적용 및 경과조치 규정의 적정성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

-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에서는 시행일(공포한 날 시행)을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안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2026.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는 지원금액 확대에 대해 소급효(2026.1.1.이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7) 이러한 민원 등으로 인해 2024.3.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음. (의안번호 1552, 유만희 의원 발의)

서는 거주요건 강화 규정에 대해 2026.7.1. 시행 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거주요건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 제1항의 지원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거주요건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체적으로 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안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 강화(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 계속 거주) 규정을 2026.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조건의 거주요건을 강화함에 있어, 공포 후 즉시 시행이 아닌 2026.7.1.까지 시행 시점을 늦춰 시민에게 기존 제도적 요건변화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안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7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의 경우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⁸⁾, 매년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하는 점과 2026년 본예산에서 2026년 1월부터 다자녀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8) 헌재 1995.12.28. 선고 95헌마196

-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거주요건 강화(6개월 이상 서울 거주)의 개정규정(안 제4조의4제1항 제1호)의 시행일(2026.7.1.) 전까지 종전 규정(신청 시 서울 거주)을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시행일 규정에서 개정규정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해석상 종전규정은 당연히 그 시행일 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로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임⁹⁾.

법제처,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 김태현, p.207.

따라서, 시행일 규정에서 개정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해석상 종전규정은 그 시행일 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시행일 규정에서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단서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행일 규정의 단서를 해석할 때 해당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종전규정은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로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거주요건 강화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부칙 제3조의 거주요건 강화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9) 법제처,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 김태현, p.207.

※ 부서 의견 : 원안 동의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붙임)

-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서는 다자녀 임신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 동의 의견임.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다만, 둘째 자녀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이미 예산이 확정 편성되어 있어,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70만 원 이상’ 이라는 하한액으로 두기보다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100만 원 이내’ 의 상한액으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로 강화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로 인해 서울시 실거주자임에도 기간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24년 3월 동일한 민원으로 거주요건을 폐지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단순한 요건 강화보다는 타 지자체 중복수급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거주요건 시행일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는 경과조치는 시행일 규정의 반대해석상 법리적으로 당연한 사항이므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어 보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종훈	02-2180-8148

붙임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		
-----------	------------------------	--	--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남창진 의원(1인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임산부의 자녀 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한 근거 마련 필요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70만 원 이상으로 확대(안 제4조의4제1항) ○ 교통비 지원 조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함(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 교통비 신청 조건을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함(안 제4조의4제1항제2호) 		
추진경과	○ 조례 개정안 발의('26.2.9.)		
부 서 검토의견	원안 동의(○) / 수정 요청() / 부결 요청() / 보류 요청()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어 다자녀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 지원금액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84백만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 기반영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문제 없음 <p>* 2자녀(13,974명) 10만원, 3자녀 이상(1,938명) 30만원 각각 추가 지원 (바우처 형태로, 상반기 신청자는 당해 100% 소진, 하반기 신청자는 당해 50% 소진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시 재정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적합한 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재정 분배가 요구되어, 거주요건을 당초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신청기간 또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서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의인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이 시민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담당부서	저출생담당관	팀장	여언영(☎2133-5029)
		담당	김유림(☎2133-5054)